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2016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의 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법정의무경비 정산과 정부 추경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 등을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경예산안 규모

○ 세입 : 기정예산 791억 9,922만원 대비 68억 8,361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기정대비증감	비율(%)
계	86,082	79,199	6,883	8.7
일반회계	86,082	79,199	6,883	8.7

○ 세출 : 기정예산 2,099억 4,911만원 대비 41억 9,229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기정대비증감	비율(%)
계	214,141	209,949	4,192	1.9
일반회계	214,141	209,949	4,192	1.9

4.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 관광체육국의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9,900만원의 8.7%에 해당하는 68억 8,4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은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43억 5,000만원)
 -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7억 4,000만원)
 - 산업관광 육성 (4억원) 등으로

전체 8건, 합계 68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16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 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79,199,225	86,082,837	6,883,612
1	관광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250,000	250,000
2	관광사업과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44,000	44,000
3	관광사업과	서울관광코스 개발 운영	115,000	145,000	30,000
4	관광사업과	산업관광 육성		400,000	400,000
5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장장애인체육회 육성		29,000	29,000
6	체육정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1,682,225	1,722,337	40,112
7	체육진흥과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740,000	1,740,000
8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4,350,500	4,350,500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1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9억 4,900만원의 1.9%에 해당하는 41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사업 등 5건의 증액(4억 200만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사업 등 3건의 신규(64억 9,100만원)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1건 감액(27억원)으로

전체 9건, 합계 41억 9,200만원을 증액 및 감액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 증액사업 8건, 68억 9,200만원 증액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B)	증감 (B-A)	증감사유(필요사유)
	계		(×1,797,225) 13,236,052	(×8,680,837) 20,128,259	(×6,883,612) 6,892,207	
1	관광 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	1,600,000	(×250,000) 1,850,000	(×250,000) 250,000	문체부 공모에 따른 국비 지원
2	관광 사업과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948,000	(×44,000) 992,000	(×44,000) 44,000	문체부 공모에 따른 국비 지원
3	관광 사업과	서울관광코스 개발 운영	(×115,000) 1,620,350	(×145,000) 1,650,350	(×30,000) 30,000	국비 추가 지원
4	관광 사업과	산업관광 육성	-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문체부 공모에 따른 국비 지원
5	체육 정책과	서울특별시장애인 체육회 육성	7,025,000	(×29,000) 7,054,000	(×29,000) 29,000	국비 지원
6	체육 정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1,682,225) 2,042,702	(×1,722,337) 2,091,409	(×40,112) 48,707	국비 추가 지원
7	체육 진흥과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	(×1,740,000) 1,740,000	(×1,740,000) 1,740,000	문체부 공모에 따른 국비 지원
8	체육 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	(×4,350,500) 4,350,500	(×4,350,500) 4,350,50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총12건)

○ 감액사업 총 1개, 26억 9,991만원 감액

(단위 : 천원)

연번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B)	증감 (B-A)	증감사유(필요사유)
	계		4,000,000	1,300,090	△2,699,910	
1	관광체육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4,000,000	1,300,090	△2,699,910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분 감액

나. 주요사업별 검토

□ 관광분야 4개 사업 검토의견

-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지원”은 기정예산 16억원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지원 비율은 관광기금 50%, 지방비 50%로, 종로구가 서울 한복판 도심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거진 나무와 계곡, 그리고 흙냄새로 둘러싸인 인왕산 자락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아 탐방로의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왕산자락길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지원한 결과 선정되어 총 2억 5,0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시행된 사업임.

-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은 기정예산 9억 4,800만원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동 사업은 서울 방문 관광객에게 태권도 공연 관람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여행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 사업 지원 신청을 하고 12월 선정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은 2016년 2월에 이루어진 것임.

- “서울관광코스 개발 운영”은 기정예산 16억 2,000만원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동 사업은 서울관광코스 개발 운영 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로서 서울도보관광코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매력적인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자 매년 정액 보조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0월 국비 가내시액은 1억 1,500만원이었으나 2016년 3월 확정내시가 1억 4,5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되어 시비 추가 부담 없이 편성된 것임.

- “산업관광 육성”은 시비 없는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4억원이 편성된 바,

동 사업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관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1·2·3차 산업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 육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지원 비율은 관광기금 50%, 지방비 50%이며, 서울시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관광 홍보관) 조성과 성수동만의 유니크한 관광지도를 제작하고자 했던 성동구가 선정되어 총 4억원이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시행된 사업임.

□ 체육분야 4개 사업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은 기정예산 70억 2,500만원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중 장애인생활체육 대회를 축제형으로 개최하여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계연도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후 시도별 국비를 확정·통보하는 절차에 따라 3월에 계획 수립하여 4월 국비 2,900만원 정액 지원 확정 통보를 받게 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임.

-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정예산 20억 4,300만원에 4,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구 공동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으로 도모하고자 사업임.

만5세 ~ 만18세에 해당하는 유·청소년에게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을 1인 1강좌로 월 7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비, 시비, 구비 70:15:15의 매칭사업으로써 '16년 8월 11일 국비 추가로 4,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른 시비 매칭액 85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임.

-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경우, 두 사업 모두 시비 없는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각각 국비 17억 4,000만원, 43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두 사업 모두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 전용 체육관 또는 강당 겸용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16년 중대도시 10개소에 국비지원금(국민체육진흥기금) 9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비율(각 개소당 분담비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0%, 지방비(구비) 20%, 교육청 50%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에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을 확장하여 기금을 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노원구 영신여고에 9억원, 양천구 신화중에 8억 4,0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시행된 사업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준공된 지 10년이상 경과한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용자 안전 관련 시설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2016년 서울시에 43억 5,0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총사업비 비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4%, 지방비(구비) 66%임.

이에 총 20개소가 신청, 12개소가 선정되었고, 안전 관련 시설 긴급 개수·보수 9개소와, 노후시설 개수·보수 3개소에 시설비(체육시설관리사업소) 26억 5,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각 자치구) 17억 50만원이 교부되어 시행된 사업임.

□ 감액분야 1개 사업 검토의견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의 경우 기정예산 40억원에서 27억원이 감액된 추경예산 13억원이 편성됨.

동 사업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주요 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의 연차적 시행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고자 주경기장의 메탈등(2KW 768등)을 철거하고 LED조명등(1.4KW 404등)을 설치하고자한 것임.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할 LED조명등은 국내최초로 종합운동장(축구+육상)에 설치한 사례로, 다수업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규격가격입찰방식(최저가입찰)’으로 추진하여 메이저급의 LED스포츠조명등 제작사 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 1순위로 낙찰된 머스코풍산에서는 88올림픽을 개최했던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징성과, 대한민국 최초로 체육시설 종합경기장에 고용량 LED조명등 보급시 기업 홍보효과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조달청 예정가격 38억 1,200만원의 33.8%인 12억 900만원에 투찰(최저가)하여 계약자로 선정됨에 따라 낙찰차액분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임.

[입찰 결과]

순위	입찰사	제조사(국적)	투찰금액	투찰률(%)
1	머스코풍산(유)	머스코스포츠라이팅(미국)	1,290백만원	33.836
2	블루카이트(주)	(주)케이엠더블유(대한민국)	1,749백만원	45.876
3	(주)태현	GE라이팅(미국)	2,840백만원	74.493
4	(주)천일	(주)필립스라이팅(네덜란드)	3,640백만원	95.493

동 사업의 경우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2019년 전국체전 시설개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17년부터 국비확보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비만으로 집행되는 이번 예산을 감추경 것이 오히려 시 재정의 절감에 더 큰 효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명시이월사업 검토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¹⁾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임.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사고이월²⁾과는 의회 승인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음.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매년 명시이월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감추경하고 다음연도 세출사업으로 편성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

- 서울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요청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1개 사업, 1,681억 2,100만원이며, 이 중 관광체육국 소관 명시이월은 5건으로 서울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의 3.3%인 55억 1,800만원임.

<관광체육국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
		소계	명시이월	
2016	209,949	5,518	5,518	2.6
2015	195,955	12,694	12,694	6.5

2016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액은 총 5건으로 예산액 2,099억 4,900만원 대비 2.6%인 55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 명시이월액 126억 9,400만원과 예산액 대비 이월율 6.5%에 비해 금년 이월액은 71억 7,600만원 감소하고 이월율은 3.9%p 낮아졌음.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조성 사업비”는 예산액 87억 8,300만원의 45.4%인 39억 8,3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16년도 국비가 30억만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분담 비율(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에 맞추어 시비를 18억으로 감액 교부하고 미교부금은 '17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
		소계	명시이월	
계	22,693,500	17,175,875	5,517,625	24.3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3,000,000) 8,783,000	4,800,000	3,983,000	45.4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	1,841,000	1,736,375	104,625	5.7
서남권 돛야구 주변 편의시설 확충	1,000,000	960,000	40,000	4.0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55,000	0	55,000	100
생활체육시설확충	11,014,500	9,679,500	1,335,000	12.1

- “서울 매력명소 관광자원 개발 활용”의 경우 예산액 18억 4,100만원의 5.7%인 1억 5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는데, 동 사업은 세계적인 저명작가를 섭외하여 책을 출판하고자 했으며 노벨상 수상작가(로 클레지오)의 섭외기간 소요(8개월) 및 원고 집필기간(4개월)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후 외국어 번역, 책 출판 등 사업 마무리를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유명한 작가와의 섭외과정을 비롯하여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 사업의 어려움이 느껴지나 집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서남권 돛야구 주변 편의시설 확충”의 경우 예산액 10억원의 4.0%인 4,0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데, 동절기(가지치기, 보온, 병충해 방제 등) 및 봄철 해빙기(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에 돛구장 수목 및 초화류 관리 작업을 지속하고자 명시이월 처리하고자하는 것으로, 수목관리는 식생의 착생시기

를 고려하여 준공 후 2년(2017년)까지만 진행하는 것임.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예산액 5,500만원(도시계획수립 용역)의 전액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데, 동 사업은 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 사전절차인 타당성 검증결과가 7월 말에 통보되어 '16.10월 수시투자심사를 거쳐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나 5월 투자심사시 서울연구원 용역이 누락되어 보류가 된 점 등을 보았을 때 애초 사업진행시 면밀한 준비가 부족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 “생활체육시설확충” 예산액 110억 1,500만원의 12.1%인 13억 3,5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는데, 신내3지구 우수지 체육시설 조성(5억 3,500만원)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지 복개공사를 진행한 후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난지야구장 조성(8억원)은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지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발주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함.

라. 종합 검토의견

-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반영과 함께 일부 매칭사업의 경우 시비 대응분 확보를 위한 예산안으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한 증추경이나 이월을 위한 감추경이 아니라 기존에 간주처리했던 국비보조금 관련 예산만 반영된 것임.

지금까지는 이러한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후에 보고

만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의한 바는 없었으나 2016년도 예산안 심의시 예결위에서 예산총칙에 존재했던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를 삭제하여 의결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임.

따라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전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한 우리회의의 심의가 과연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인지 혹은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동시에 제출된 심의일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보다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의 지연, 부족, 교부 등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과 같이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당초 신청액 보다 국비가 부족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국비 가내시 및 확정결과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더불어 기존 국고지원사업에 대해 당초 신청액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실·본부·

국별로 중앙정부사업과 서울시의 세부사업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등 국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도 종전에 익년도 본예산 심의시 첨부되었던 명시이월사업 5건에 대한 심의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러한 명시이월이 사업을 추진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애초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한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